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채수지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행 조례 제14조제3항은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,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제보 안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존재할 경우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
○ 한편, 상위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에서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'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'로 규정하고 있어, 현행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'개별 공익침해행위'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규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보상금 산정 및 집행의 공정성·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여부 판단과 산정 절차가 보다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상금 산정의 모호성이 해소되고, 동일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정착시키며,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침해행위 근절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조례와 상위법 간 규정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.
- 공익제보자 보호와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